

西洋服飾史에 나타난 禁制考察

A Review on the Sumptuary Laws of Western Costume

慶熙大學校 衣裳科

助 教 授 金 仁 淑

Dept. of Clothing,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 In Sook Kim

<目 次>

I. 緒 論

II. 服飾禁制의 目的

III. 資料 및 整理

I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lies in reviewing of the western costume history in the light of the negative regulations concerning costumes and adornments.

Readings related with the subject lead to the following findings:

1.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sumptuary laws has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feudalism and the frequency of their occurrence is related with the formation of feudal system, its decline, the appearance of imperial regimes and the start of civil revolutions.
2. Sumptuary regulations spread westward with the flow of civilization, eg., in the sequence of Italy, Swiss, France, Britain and New World.
3. Sumptuary laws are also found in abundance in the English colonies of America, and their object seems to be rather of the moral concern than class distinction of economical restriction.
4. The reviewed sumptuary regulations are concerned with:
 - A. Material gold or silver clothes, silks, ermine, marten or miniver furs, velvets, laces and embroies.
 - B. Colors-Purple, scarlet and red. Other colors do not show consistent pattern of color-status symbol.
 - C. Form-Length and width of headdresses, shoes, collars, trains or hoops.
 - E. Numbers of dresses allowed to be worn.

I. 緒 論

奢侈規制法을 사전에서는 「원래는 음식, 음료, 의복, 장신구 기타 사치품목의 개인의 지나친 소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었다고 풀이하고 「최근에 와서는 특정물품의 생산 및 소비를 금하

거나 혹은 국내 소비성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어떤 사회가 사치규제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 사회내에 숨에 명기된 바의 특정한 내용의 사치가 범람하고 있음을 뜻한다.

부식이 食·와와 더불어 인간의 생활양식, 나아

가서는 문화의 패턴을 비추는 거울의 하나라면, 그러한 복식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규제를 통해 복식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복식사의 이해에 있어 역설적 혹은 反語的 視角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Ⅱ. 服飾禁制의 目的

복식금제의 가장 우선적이고 원초적인 목적은 물론 계급적 규제를 가하는 데 있다.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복식으로 계급을 상징하며 복식은 곧 儀章이나 位階秩序를 나타냈으므로 이러한 상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즉 신분을 벗어나는 衣裳행위는 곧 질서의 파괴, 사회혼란을 조장시키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봉건주의 계급제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로서 안정되어 있을 때보다 상업과 교역의 발달로 富를 획득한 상인들이 봉건적인 속박을 화폐로 相殺시키고 지배계급이 지녔던 기존의 질서와 우선권을 넘보기 시작할 때부터 가중되었다. 따라서 복식금령은 봉건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13세기경에 그 출현빈도를 늘려 르네상스기에서부터 17세기를 통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가, 衣裳으로 인한 계급표식이 不法化된 18세기末 불란서 혁명기에 이르러 그 존재의의를 잃거나 혹은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즉, 혁명기에 이르러서는 복식은 종적인 位階의 상징대신, Cockades 나 pantaloons 등에서 보는 정치意識의 상징, 혹은 incroyable 및 ridicules 群에서 보는 의복에 대한 思想표현으로 橫의 구분의 매체가 되었던 것이다. 복식을 계급표식의 수단으로 보는 태도는 우리나라 신라 흥덕왕때에 내려진 복식금령의 서두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사람에게 는 上下가 있고 지위에는 尊卑가 있으며, 이름도 같지 않은데 의복 또한 다르다」²⁾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복식금령의 목적은 윤리적인 것일수도 있다. 국가가 家父長적 역할을 하던 사회에서는 최고 통치자는 그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면은 물론 윤리적·도덕적 측면에까지 보호자적인 관여를 하고자 한다. 이것은 권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교회가 복

식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과도 관계가 있으며, 또한 윤리적 가치가 종교적 가치와 동일시되던 사회에서는 가치의 기준이 黑白의 명확성을 지니고 있어 규제령의 명분이나 시행에 용이성을 가져다준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윤리적 목적은 前述한 흥덕王 때의 序言中 「분수를 지나쳐 예의에 거슬리고 풍속이 쇠락하여 가고 있다.」는 대목이나 신대륙의 청교도들의 「복장의 過飾은 우리들의 황망한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며,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난다.」³⁾는 복식금제의 辯에도 표현되어 있다.

이상에 든 관념적 목적 외에 경제적 목적도 중요하다. 自國산업의 보호를 위해 17세기 초반부에 Richelou 나 Mazarin 이 행한 金·銀絲織物이나 레이스 종류에 대한 금령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自國生業의 보호외에도 정부의 稅收증가라든지, 전체 국민의 소비지출의 절감을 통해 국가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자는 목적도 있었고, 또한 戰時에는 군수물자조달을 위해 비실용적 범위에서의 물자의 낭비를 규제할 수도 있다. Phillips 와 Staley 는⁴⁾ 이들 목적외에도 소비자 보호라든지 국민 건강의 보호 또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이 중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목적은 1. 계급差 유지, 2. 윤리적 목적, 3. 稅收증가라고 하였다.

Ⅲ. 資料 및 整理

복식에 대한 최초의 규제는 기원 1200여년전의 아시리아인의 율법에 「自由民 기혼녀는 公共의 자리에서는 베일을 써야한다」⁵⁾는 항목에 나타난다. 또한 기원 7세기전경의 그리스 솔론의 율법에는 여자들은 한번에 세벌 이상의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부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액수는 그녀가 속한 家長의 富力에 依한다는 조항이 나타나고, 기원 2세기 전의 로마에서는 잔치에 청할수 있는 손님數나 잔치에 드는 비용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서구에서 사치의 규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富를 획득한 중산층이

<표 1> 25년 간격으로 나타난 복식금령의 빈도수

년	도	이태리	독 일	스위스	프랑스	영 국	식민지 (미국)	합 계
1675~1700		—	—	—	—	2	2	4
1650~1674		—	—	—	—	3	19	22
1625~1649		—	—	37	10	4	23	74
1600~1624		—	—	4	—	7	6	17
1575~1599		—	—	—	—	38	—	38
1550~1574		4	—	4	19	10	—	37
1525~1549		3	—	3	20	34	—	60
1500~1524		4	—	—	—	37	—	41
1475~1499		—	13	5	—	16	—	34
1450~1474		3	—	7	—	28	—	38
1425~1449		—	—	—	—	1	—	1
1400~1424		1	—	—	—	23	—	24
1375~1399		3	—	14	—	1	—	18
1350~1374		1	21	—	—	27	—	49
1325~1349		7	—	—	—	2	—	9
1300~1324		6	—	—	—	—	—	6
합 계		32	34	74	49	233	50	472

출처 : Phillips, Joana W. and Helen K. Staley, "Sumptuary Legislation in Four Centuries",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ed. Gurel, Louis M. and Marianne S. Beeson(Iowa: Kendall/Hunt), p.69.

봉건사회의 영주와 권력을 견주는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중세이후 사치규제가 활발하게 시작된 곳은 이태리, 스페인 등지의 르네상스의 기운을 가장 일찌기 해동시킨 곳이며, 이 금제령의 시행은 르네상스文化의 西·北進을 따라 南歐에서 中歐로 中歐에서 대륙을 건너 영국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1 참조>

이러한 사치규제령은 이 습의 목적이 「계급차의 표시」이라는 사회적 욕구에서 稅收의 증가라든지,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경제적 목적의 방편으로 변해감에 따라 그 출현 빈도가 줄어들며, 18세기말의 불란서 혁명기에 이르면 복식에 의한 계급의 표지가 불법화된다. 이후로 어떤 사회내에서 한 계층이 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치규제령은 그 존재가 불가능해지고 단지 汎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이익이나 국민전체를 그 수혜대상으로 했을 때만 가능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복식규제령을 살필에 있어 규제대상의 품목이나 특징을 한 눈에 보는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규제령 (1) 자료 (2) 색 (3) 형태 (4) 매수로 구분하여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형편상 복식규제령에 직접 접할 수 없어 二次的이고 간접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이 고찰이 이루어졌으므로, 규제령의 법령으로서의 구속력, 세부조항 및 年代를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으나 그런 경우라도 참고사항으로 표기하여 누락시키지 않았음을 밝힌다.

IV. 結 論

앞에서 살펴본 자료를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복식금령은 봉건제도의 계급分化和 긴밀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material에 관한 禁令

	제		료		해 당 계 급	着 用 可, 不可	나 라	년 도
	金 · 銀	絹	毛 皮	기 타				
金製指環	絹布	絹布	담 비 (marten)	외국대사 男子	可	로	121~180	
鎔 · 漆緞한具민신발, 金銀絲장식한 모자	絹絲장식 물은 모자		白 담 비 (ermine)	王室公露人 · 티인 · 메장 이 · 문지기 등 타금사총	不可	스	1258	
金 · 銀絲織, 金絲자수	絹布	白 담 비 수달피 (otter)	Drawn work, 섬세한 자 수 · 가죽 · 기타 trimmings	王 · 귀족 · 大公 및 太子 子의 예복	可	"	1258	
銀	Sendal ^o		水晶 · 단추 · 진 목걸이	귀족 · 기사	不可	"	1258	
金織	絹布			王제외	不可 (단, 모 내의 가장자리 장식은可)	"	1258	
	絹布			王과 고금기사 제외	不可 (단, 안 감용도不可)	"	1348	
	絹布			王子	可	"	1395	
	絹布			王子 및 말의 소유주	可	"	1490	
	絹布			누구든지	不可	"	1515	
金 · 銀絲			지수장식		不可	"	1520	
金 · 귀금속 · 金銀製冠	絹布	북정 모 피		중류층 남녀	路上着用不可	프 랑 스	1274	
	絹布	다담 쥐 · 담비		왕女 · 공작공부녀	不可	"	1294	
金 · 銀布					可	"	16세기	
金 · 銀자수	絹布		Cutwork		수입 금지	"	1625	
金 · 銀布	無紋絹布		우단 · 자수		不可	"	1633	
			레이스		不可	"	1634	
金銀絲장식 金布 · 金織	絹布	黑담비 (sable)		王제외	可	"	1644	
			紋織우단, Stain, Damask	王제외	不可	"	1644	
			두枚의 우단을 걸치는 행위	Gaster 훈자사제외	不可	영	1463	
					不可	영	1463	
					不可	"	1463	

毛製모자	高官제의한 6歲이상男子 每 日요일과 祝聖日에	必히 着用	16세기
毛製壽衣	법관제의	不可	?
우단製안단	적질한 수입이 있는 사	不可	1634
Beaver 製 모자	누구든지	不可	"
레이스장식	누구든지	不可	1636
金·銀絲장식	누구든지	不可	1639
絹絲장식			

<표 8>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色에 관한 雜字

色數	자주색계통 (purple)	紅색계통 (Red)	色			해 당 계 급	사용 可 不可	나라	년도
			金·銀色계통	白色계통	黃色계통 (yellow)				
7	자주 색		黃 金 色			王室 族長	可	로마	?
3		紅色신발		白色신발	黃色신발	관리 농민 女子	可	"	"
2					綠色신발 有色衣	하급민 : 국장이 나공공석	可	"	"
1	자주 색	Scarlet 양말 Scarlet 雨衣 Bright Red 色衣	鎔 金 鎔 馬 具		자주色 계외한 有色衣	王제의 財力이 許하는대로 王室公證人·弓人·메잡이·하급시중	不可	로마 그리스 비잔틴 비잔틴 스페인 스페인	121~180
		Red 色馬具 Red 單色馬具		白色馬具	pink 色衣, 綠色衣 질은 褐·黑·붉은 綠色양말	王제의 王室聖職者	不可	"	1258
					黃色투너	"	可	"	1258
					靑色馬具	고위급王室聖職者	可	"	1258
	자주 색				有色장갑	王제의 聖職者	不可	프랑스	13세기
							不可	"	15

자주색網	Red 色 Scarlet 色	방패의금속 物에鍍金	白色上衣 裳	Sad Color 로된 가운	garter 훈작사제의 교외장식제의, 남작의부 장, 기사들의 박차제의	영국 " " " "	1463 1463 16세기 " " " "
자주색					平民에 限함 王제의 백작級	不可 不可 可 에한함 不可 可	1463 " " " "

<표 4>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형태에 관한 彙 示

폭	형				해당계급	착용可 不可	나	라	년	도				
	길이	이	紋	樣							머리형태	태	기	타
구두의 가로폭 6" 이상	너 무 짧 은 상 의	각 발	세 잎 부 리 (trefoils) 밧잡미문양 부착밧생산	진통진 형태의 옷 끈달린 구두, 땀다 붙었 나 할 수 있는 소매 여행용 외투 줄무늬진 두건 옆구리에 가위발을 낸 (slashed) 구두 앞뒤가 뾰족한 구두 옷의 전 후에 옷자락 (train) 늘어뜨림 수염은 원하는 형태대로	성직자	必히착용	스	인	1258					
					"	"	"	"	"	"	"	"	"	
					"	"	"	"	"	不 可	"	"	"	"
					대공이容內에서	不 可	영	국	"	不 可	"	"	"	"
					公媼 王제의	必히착용 不 可	"	"	"	不 可	"	"	1430 1463	
					공작級해당부녀 남작 男子	必히착용 不 可 不 可 不 可 不 可	"	"	"	可 不 可 不 可	"	"	1463 1509~47 ⁹	
"	"	"	"	"	可 不 可 不 可	"	"	"	"	1556~1603 ¹⁰ "				

얼굴의 좌우양측 4" 이상 벗어나는 ruff	수염의 길이	수염의 형태 路上에서 cloak 착용	속스포드대 학의 교수 및 학생	不可	可	"	"
손가락 한마리 를 넘는 幅의 부이나 손부의 ruff	구두의 길이 24" 이상 12" 이상 6" 이상	윗등과 소매에 각한개 이상의 가윗발 (slashing) 을 낸의 상	gentlemen 王子 종교인 하급민	不可	可	"	"
지름이 1.5마 이상 되는 후프 (farthingale)		모든 자수들로서 Cutwork Cap, 끈, ruff	모든 男女	不可	可	프 랑 스	15세기
지나치게 큰 ruff와 소매		부류의 단추 및 points 장식 거대한 Boots 향수·화장품·연지·義齒·가발·높은 구두	모든 男女 낮은신분의 男子 모든 女子	不可	可	프 랑 스 Massachusetts	16세기 1634
				不可	可	"	"
				不可	可	"	1651
				不可	可	New Jersey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枚數에 관한 雜論

해 당 계 급	枚 數	착용可 不可	기	타	나라	년 도
부녀자	한번에 3벌 이상	不可			그리스	BC 638~559
부녀자				지출은 그녀가 속한 家長의 財力에 따라 제한됨. 우단 및 綉製 의상의 허용枚數는 신분에 따라 정해짐.	"	"
공작·작작·백작·기사				허용된 의상은 각각 印箋을 적어 표시해야 함. 每年, 정해진 매수의 가운데만 着用可.	이베리	14~16C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옷감의 가격을 정함. 의복에 달린 장식구의 매수와 質을 제한함.	프랑스	1294
"					"	"
王	원하는 매수대로	可			"	"
王 제의	年 4벌 이상의 suits	不可			"	"
누구든지	年 2枚 이상의 외부	不可			스페인	1560~1574
"	2년에 한벌 이상의 雨套	不可			"	"
"		不可		한벌의 양복을 완전히 가리도록 또 한벌의 양복을 겨임음이 不可.	"	"

<표 5>

한 관계가 있으며 복식의 근본적 기능이 신분의 상징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징질서의 위반은 곧 犯法이 되고, 이러한 犯法은 「규제의 습」이라는 법률적 구속행위를 요구했다. 따라서 복식금령의 출현회수는 제급分화가 그 필수조건이었던 봉건사회가 완성된 13세기에서부터 그 체제가 위협을 받고 붕괴되어 왕정을 거쳐 시민혁명에 이르는 역사의 과정과 관계가 있다.

둘째, 복식금령은 文化的 西進에 따라 대륙의 동부 및 남부, 즉 이태리와 스페인에서 가장 일찍 나타나며 그 후 출현빈도의 中心이 독일, 스위스 등의 중부 및 북부로, 다시 대륙을 건너 영국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기존의 사회체제에서 벗어나 제급제도의 속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는 신대륙에서도 빈번한 복식규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의 복식금령은 제급규제의 목적보다는 윤리적·종교적 목적이 勝렸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禁奢의 내용에 의해, 제급의 표시, 윤리적 목적, 종교적 목적을 위한 복식규제의 대상이

1. 재료로는 金, 銀絲織, 絹, 毛皮, 우단, 레이스 종류가 主가 되었고,
2. 색은 紫朱 혹은 朱紅色이 王의 색으로서 규제됨을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색은 시대를 통해 신분과 색과의 직접적 상징성이 반복되며 나타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며,
3. 형태는 주로 모자·신발·칼라·의상의 높이, 길이, 폭의 크기로 규제를 했다.
4. 또한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옷의 枚數, 衣裝에 투여할 수 있는 비용의 제한이란 方法도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註

1.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21.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71). p.413
2.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1974). p.559.
3. E.B. Hurlock, "Sumptuary Law",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ed. Mary Ellen Roach and Joanne Buboltz Eich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5). p.299.

4. Joana W. Phillips and Helen K. Staley. "Sumptuary Vegislations in Four Centuries."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Vois M. Gurel and Marianne S. Besson. 3rd ed. (Iowa: Kendall/Hunt). pp.68-69
5.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p.46
6. 중세에 많이 사용하였던 얇은 絹종류(ERNEST. p.1417)
7. 신상옥. 서양복식사(서울:수학사, 1981). p. 48.
8. 이 "슬픈 색"은 黑色·灰色·짙은褐色을 뜻함이 아니라, 엷은 색, 絨度가 떨어지는 낡은 기분나는 색을 의미한다. (Warwick, Pitz and Wyc-koff, p.116).
- 9,10. 이 두 항목의 년도는 명확치 않으나 9는 Henry 8세, 10은 Elizabeth 여왕 제위시에 취해진 금령이므로 그 제위기를 대략의 년도로 표기해 보았다.
11. 이 금령의 완전한 文面은 "연령과 지위, 직업, 미·기혼·과부를 불문하고 이 금령 이후 향수 화장품·연지·의치·가발·높은 구두를 신으므로써 臣民을 유혹하거나 속임수로 결혼에 이르도록 하는 자는 마술이나 혹은 그에 유사한 罪법행위에 관한 형벌로 다스린다."는 흥미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Marg and Joanne, p.299).

BIBLIOGRAPHY

-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수학사, 1981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1974
- 이병주, 이재, 조원홍, 김병관, 김민제 共著. 「세계문화사」, 서울:일조각, 1979
- Boucher, François.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Davenport, Millia. *The Book of Costume*. Vol.1. New York: Crown.

- Klein, Ernest.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Vol. II. Amsterdam: Elsevier, 1967.
- Horn, Marilyn J.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1975.
- Hurlock, E.B. "Sumptuary Law"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ed. Mary Ellen Roach and Joanne Buboltz Eich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5.
- Phillips, Joana W. and Helen K. Staley. "Sumptuary Legislations in Four Centuries."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ed. Lois M. Gurel and Marianne S. Besson. 3rd ed. Iowa: Kendall/Hunt.
- Rosencranz, Mary Lou. *Clothing Concepts*. New York. Macmillan, 1972.
- Warwick, Edward, Henry C. Pitz and Alexander Wyckoff. *Sarly American Dress*. New York: Amaryllis, 1965.